

2026년 「D-유니콘 프로젝트」 유망기업 모집공고

대전테크노파크에서는 선택과 집중의 맞춤형 스케일업 확대 지원으로 유니콘 도약 기반을 마련하고자 2026년 대전형 유니콘 유망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년 2월 9일

대전광역시
(재)대전테크노파크 원장

1 모집 개요

□ 사업목적

- 대전 내 성장 가능성 높은 유망 기업을 선별, 전방위적 지원을 통해 스케일업 및 글로벌 시장 진출 촉진으로 유니콘 기업의 탄생 유도

□ 지원규모 : 6개사 이내 (최종 선정기업 기준)

□ 지원대상 : 공고마감일 기준, ①대전지역 내 본사 소재 ②업력 3년 이상 중소·벤처기업 중 5년 이내 투자유치 실적이 누적 5억 원 이상인 ③비상장기업

① 선정 이후 타 지역 본사 이전 시 '지정 해제'될 수 있음

② 등기부상 회사성립연월일부터 공고마감일까지 산정

③ 코넥스 상장기업 신청 가능

□ 지원방식 : 공통지원(6개사 이내)

2

지원 내용

구 분	지원사업	사업내용	지원기관	지원규모
공통 지원	성장도약 자금지원	○스케일업을 위한 기술지원 및 사업화 지원	대전테크노파크	6개사 이내
	성장인프라 네트워크	○기업-투자사 연계 투자유치 지원	벤처캐피털타운	
		○기업 내부역량강화 지원 ○글로벌 진출 지원(해외 바이어, 투자자 등 발굴 및 네트워킹 지원)	이노폴리스 벤처협회	
	경영안정자금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우대 적용(2.5%)	대전시	
우대 사항	첨단기술기업	○첨단기술기업 지정을 위한 컨설팅 및 연계 우대	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	

※ 성장도약자금지원(기업 직접수행), 성장인프라 네트워크(지원기관 간접지원)

□ 세부내용

- **(성장도약자금)** 기업의 자율성을 부여한 맞춤형 성장지원으로 스케일업을 위한 기술지원 및 사업화 지원

- (지원규모) 6개사 이내 (최종 선정기업 기준)

- (지원금액) 총 360백만원 예산 범위 내 차등 지원 (기업당 60백만원 내외)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성장도약자금 차등 지원

- (민간부담금) 지원금의 30% 이상 현금 매칭

예) 성장도약자금 60백만원 지원 시, 민간부담금은 60백만원의 30% 이상 현금 매칭

※ VAT(부가가치세) 및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은 선정기업 부담

- (지원항목)

지원항목		지원내용
기술 지원	① 시제품 제작	- 시제품 제작(제품설계 및 개발, 제작, 재료구입 등)
	② 제품고급화	- 제품 고도화(상용화 제품 성능 개선 및 기능 추가), 사용자 경험(UX) 및 인터페이스(UI) 개선 등
	③ 지식재산권	- 국내외 특허·상표, 실용신안, 디자인 출원·등록비용
	④ 인증지원	- 제품 및 서비스의 신뢰성·성능·품질·보안 인증, 시험 분석 등(국내외) ※ 사업기간 내 결과 취득 가능한 경우만 신청
	⑤ 기술이전	- 국내 기술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거래유형 : 기술양도, 전용실시, 통상실시 등)

지원항목		지원내용
사업화 지원	⑥ 컨설팅	- 기술·경영·연구개발·마케팅·사업화 전략·법률 자문 등
	⑦ 디자인	- 제품 및 패키지(포장) 디자인, 제품 및 서비스의 UI/UX 디자인 등
	⑧ 브랜드개발개선	- CI, BI 리뉴얼 및 신규 개발 등
	⑨ 시장조사	- 해외시장 조사 및 분석
	⑩ 홍보	- 제품 홍보물 제작(브로슈어, 영상, 홈페이지 등) ※ 기존 홍보물에 대한 추가 인쇄비 제외

※ 지원 항목은 기술지원 1개 이상, 사업화지원 1개 이상 선택이 필수이며, 사업내용 및 사업비는 평가 시 조정 될 수 있음

※ 회계정산수수료는 총사업비에 포함하여 편성(1,000천원)

3 선정평가

□ **평가절차** : 단계별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

평가단계			평가내용
1차		요건심사	· 신청서 및 제출서류 검토 · 투자유치금액 및 업력 등 요건검토
2차		서류평가	· 사업계획서 검토, 현장실사(필요시) 등 기술성·사업성 평가
3차		발표평가	· 성장가능성, 시장확장성 등 사업계획서 중심 발표평가
최종 선정(6개사 이내)			· 고득점 순으로 유망기업 최종 선정

□ **1차 요건심사**

- **(신청요건)** 신청요건 및 제출서류 (누락여부 등) 검토
 - ① 투자실적, ② 업력, ③ 채무불이행 여부, ④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 ⑤ 정부, 지자체 지원사업 참여제한 여부, ⑥ 업종, ⑦ 휴폐업 여부
- **(투자유치실적)** 공고마감일까지 5년 이내의 투자계약 및 투자금 납입 완료된 누적 금액 5억 원 이상 증빙자료 확인
- **(투자실적 인정범위)** 벤처투자기관의 인정범위는 [9쪽] 참조

□ **2차 서류평가** : 1차 요건심사 통과기업 대상

- **(내 용)**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현장 실사(필요시) 등 기술·사업성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 기업 수의 2배수 이내 선정
- **(평가기준안)**

구분(배점)	평가기준	구분(배점)	평가기준
내부역량 (10)	기술·사업모델을 발전시킬 수 있는 CEO 및 참여인력의 역량	기술성 (30)	기업이 보유한 핵심기술의 기술개발 환경, 실적, 기술의 우수성 및 제품화 능력 등
시장성 (30)	핵심기술의 제품 경쟁력, 시장성장성, 차별화전략 등	사업성 (30)	유니콘 성장계획의 타당성 및 사업계획서의 수행 가능성 등

□ **3차 발표평가** : 2차 서류평가 통과기업 대상

- **(내 용)** 발표를 통한 D-유니콘 기업으로의 사업계획의 적정성, 성장가능성, 시장확장성 등 심층 평가
- **(평가기준안)**

구분(배점)	평가기준
D-유니콘 사업계획의 적정성(20)	① D-유니콘 프로젝트 사업계획서 사업 목표의 명확성 (5)
	② 사업내용 및 실행 가능성 (5)
	③ 추진 전략의 구체성 및 추진 방향의 적정성 (5)
	④ 사업비 편성 및 활용 용도의 적정성 (5)
성장가능성 (40)	⑤ 시장 점유율 확대 등을 통한 성장 가능성 (10)
	⑥ 기술·사업모델의 고도화, 사업 확장 등을 통한 기업 내부적 성장 가능성 (10)
	⑦ 국내·외 후속 투자유치 가능성 (20)
시장확장성 (40)	⑧ 시장 규모의 성장(확대) 가능성 (20)
	⑨ 글로벌시장에서 선도·지배적 위치를 선점할 수 있는 가능성 (10)
	⑩ 창출될 신산업·신시장이 글로벌 시장 및 생태계에 미치는 파급력 (10)

□ **최종 선정**

- **(최종 선정)** 3차 평가의 고득점 순으로 6개사 이내 최종 선정
※ 평가 결과 기준 미달 기업 지원 제외
- **(동점자 순위)** 합계 점수가 동일한 경우 성장가능성, 시장확장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순으로 항목별 점수가 높은 순서 기준

4 사업 추진일정



※ 상기 일정은 사업 추진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신청방법

- **(공고기간)** 2026. 2. 9.(월) ~ 2. 27.(금)
- **(신청·접수기간)** 2026. 2. 23.(월) ~ 2. 27.(금) 18:00 까지
- **(접수방법)** 대전기업정보포털(www.dips.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절차: 기업 회원가입(기업인증필요) → 온라인 접수(과제접수) 해당란 입력 → 제출서류 첨부* 후 등록 완료 → '최종신청' 클릭 → 온라인 접수증 출력하여 보관

* 제출서류 순서대로 압축하여 1개의 압축파일로 첨부

※ **원클릭 제출 "예"로 신청**(신청서 원본은 선정 후 별도 제출)

< 유의사항(필독) >

- *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다 및 기업인증 등 추가 시간이 필요한 관계로 전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사전 입력 완료 권장
- * **온라인 신청만 가능**(접수기간 내 작성 완료 및 제출하지 않은 과제를 e-mail 또는 오프라인 신청 불가)
- * 온라인 등록 시 전체 용량이 100MB 초과되는 경우 업로드 불가
-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제출서류 미비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6 신청 및 지원제외 사항

- **(지원제외 사항)**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이때,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관할 세무서에 신고 된 결산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

채무 불이행	<p>①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p> <p>②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 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로 함)</p> <p>③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p> <p>④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로 함)</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10px; margin-top: 10px;"> <p style="text-align: center;">< 관련 문의처 ></p> <p>◇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1600-5500)</p> <p>◇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 및 재기지원 보증: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042-281-3720, 3755)</p> </div>
부실위험	<p>⑤ 현재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 1,0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50% 이하인 기업(단, 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인 경우는 예외로 함) *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기자본) × 100</p> <p>⑥ 자기자본 전액 잠식</p> <p>※ 단, ⑤, ⑥의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 우선주,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적용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시 인정 가능</p> <p>⑦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년도 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p>
기타사항	<p>⑧ 부실징후가 있거나 유니콘 기업 육성 취지에 부적합한 경우</p> <p>⑨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참여 제한 제재 중인 기업, 대표자</p>

7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필수여부												
1	2026년도 「D-유니콘 프로젝트」 사업계획서 (양식1~5 포함) - [양식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양식2] 투자유치내역확인서 - [양식3] 주주명부 - [양식4] 민간부담금 참여의사 확약서 - [양식5]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첨부양식 (원본)	필수												
2	투자계약서(최근 5년 이내) * 투자유치내역확인서에 기재한 투자계약서(사본) 일체 * 투자자 구분에 따른 추가 서류 필수 제출 <table><tr><th>투자자 구분</th><th>제출서류</th></tr><tr><td>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기술지주회사 사모집합투자기구</td><td>사업자등록증</td></tr><tr><td>투자조합</td><td>고유번호증</td></tr><tr><td>개인(엔젤투자자)</td><td>투자확인서(한국엔젤투자협회 발급)</td></tr><tr><td>창업기획자</td><td>창업기획자 등록증</td></tr><tr><td>외국투자회사</td><td>Certification of Registration</td></tr></table>	투자자 구분		제출서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기술지주회사 사모집합투자기구	사업자등록증	투자조합	고유번호증	개인(엔젤투자자)	투자확인서(한국엔젤투자협회 발급)	창업기획자	창업기획자 등록증	외국투자회사	Certification of Registration	투자자, 투자금액, 투자 계약체결일 확인 필수 (사본 가능 - 원본대조필 날인)
투자자 구분	제출서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기술지주회사 사모집합투자기구	사업자등록증														
투자조합	고유번호증														
개인(엔젤투자자)	투자확인서(한국엔젤투자협회 발급)														
창업기획자	창업기획자 등록증														
외국투자회사	Certification of Registration														
3	신청기업 현황조사표 (※ 엑셀 자료 이메일 제출)	첨부양식 (엑셀)													
4	사업자 등록증	대전기업정보 포털 '원클릭 서류 제출' 시 자동 업로드													
5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유효기간 내)														
6	4대보험 완납증명서 (유효기간 내)														
7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舊. 법인등기부등본) * 말소사항 포함, 전체 페이지 제출	공고일 이후 발급분 (원본)													
8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또는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명부 (전년도말('25.12.31.) 기준, 전월말('26.1.31.) 기준)														
9	최근 3년분('23, '24, '25년) 재무제표 * '23년, '24년 표준재무제표증명은 '원클릭 서류 제출' 시 자동 업로드 * 25년 결산 이전 기업의 경우 세무대리인으로부터 발급받은 재무제표확인 제출														

※ 발표평가 대상자는 PPT 발표 자료 별도 제출 (대상자에 한해 추후 안내)

※ 평가 과정 중 필요시 추가 제출서류 요청 가능. 제출서류 및 증빙자료 누락 시 신청 접수 대상에서 제외

8

기타 유의사항

- 공고문 내용 미숙지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음의 경우는 지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제출서류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정부, 지자체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 최종 선정기업은 대전테크노파크가 정한 기한 내에 성장도약 자부담금 (현금)을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협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최종 선정기업은 대전광역시, 전담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요구(성과 조사 등) 및 사업 추진 현황 조사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요건검토 및 매 평가과정을 비롯하여 협약체결 전후에도 요건부적합이 확인될 시 요건탈락 처리될 수 있습니다.

9

문의처

구분	담당부서	담당자	문의처
사업 관련 문의	기업성장본부	손지훈 책임	042-930-4854 / rookie0409@djtp.or.kr
DIPS 대전기업정보포털 시스템 이용 문의 (서류제출 등)	운영지원실	정보화팀	DIPS 대전기업정보포털 → 소식 → Q&A

□ 아래의 유형에 해당하는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실적 인정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
 - 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 ②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 ③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 ④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⑥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
 - ⑦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투자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⑧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른 자
 - ① **신기술창업전문회사**
 - ②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 ③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
 - ④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⑥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 ⑦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 ⑧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해당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자**
 - ⑨ 「농림수산물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
 - ⑩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 ⑪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첨단기술지주회사**
 - ⑫ **기술보증기금**
 - 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 ⑭ 13의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⑮ 전문성과 국제적 신인도 등에 관하여 중소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외국투자회사**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의 방식으로 투자하는 **외국투자회사***
 - * 외국투자회사: 1)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한 날 현재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정관에 따라 특별회원으로 가입한 외국투자회사
 -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라 결성된 국내 벤처투자조합에 직접 출자한 실적이 있는 외국투자회사
 - 3)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한 기업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진 날 또는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한 날 현재 해외벤처캐피탈협회 소속 투자회사
4.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투자자산운용사, 증권사**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특수관계인과 개인투자자(온라인 소액 투자자 포함) 투자실적 제외**